

행정처분의 세부기준(제19조의7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
- 2) 재난안전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가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73조의3 제1항제1호	지정취소		
나.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	법 제73조의3 제1항제2호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
다.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	법 제73조의3 제1항제3호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